3. 보험약관

보통약관

일반조항
부문1:주택
부문2:온실

특별약관

일반조항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부문1:주택 특별약관
주택 소파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동산 특별약관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부문2:온실 특별약관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3162-19603610-09381681

풍수해보험I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나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주민부담 보험료(이하 ‘주민부담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

3162-19603610-09381681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계약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와 소방방재청이 맺은 풍수해보험사업약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원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④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6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⑥계약자가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⑦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주민부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162-19603610-09381681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1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14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로 아래의 재난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보상하는 재난 기준

구 분		기 준
태 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때
홍 수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때
해일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다만,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해일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②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3162-19603610-09381681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5.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

3162-19603610-09381681

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1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험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방지 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릅니다.

제21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손해평가를 실시

3162-19603610-09381681

하여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7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26조(잔존물)
회사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로 봅니다.

제27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8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3162-19603610-09381681

제3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3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3162-19603610-09381681

[별표 1] 손해구분표

1. 주택

파손	전파, 유실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파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반파로 간주한다.
	소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벽의 5㎡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지붕재의 5㎡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임)
침수	주택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162-19603610-09381681

2. 온실

☞ 온실의 전파, 반파, 소파 여부는 전체 시설면적이 아닌 피해 면적 부분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파손	전파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유실포함)
	반파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소파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피해면적의 산정

■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X 세로길이

3162-19603610-09381681

[별표 2] 시설종류별 기준단가표

구분			기준단가	
주택	주택면적 50㎡ 이하		단독	50,000,000원/동,세대
			공동	45,000,000원/동,세대
	주택면적 50㎡ 초과		단독	1,000,000원/㎡
			공동	900,000원/㎡
온실 주1)	단동 하우스	유리철골펫트온실	80,120원/㎡	
		철골유리온실	104,150원/㎡	
		자동화비닐하우스	59,186원/㎡	
		철재파이프하우스 (A~G형)	9,644원/㎡	
		철재파이프하우스 (H~K형)	11,853원/㎡	
		철재파이프하우스 (A-1형)	4,402원/㎡	
		철재파이프하우스 (B-1형)	4,555원/㎡	
		목재하우스	3,420원/㎡	
		죽재하우스	2,280원/㎡	
		1-A_2형(표고, 양묘)	25,000원/㎡	
	연동 하우스	1-2W	17,900원/㎡	
		1-2W각관 A형		
		1-2W각관 B형		
		1-2W서까래 보강형		
		1-2W보완형		
주택 내에 소재 동산	주택면적 50㎡ 이하		단독	5,000,000원/동,세대
			공동	4,500,000원/동,세대
	주택면적 50㎡ 초과		단독	100,000원/㎡
			공동	90,000원/㎡

주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의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는 2016년까지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2017년부터 불허, 다만 농림부 고시 제2007-64에 의하여 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용.

주 2) 2008년부터 신규 온실은 농림부 고시 제2007-64에 의한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별표 2-1, 2-2, 2-3 참조)만을 규격으로 인정.

3162-19603610-09381681

[별표 2-1] 농림부 고시 제2007-64호에 의한 내(耐)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구분	규격명	설계		시설비(원/㎡)
		적설심(cm)	풍속(m/s)	
단동하우스 전문기관	07-단동-1	50	35	17,100원/㎡
	07-단동-2	50	35	17,600원/㎡
	07-단동-3	50	36	16,800원/㎡
	07-단동-4	48	37	17,000원/㎡
	07-단동-5	45	35	15,800원/㎡
	07-단동-6	40	35	15,600원/㎡
	07-단동-7	35	35	14,800원/㎡
	07-단동-8	30	30	14,600원/㎡
	07-단동-9	25	30	13,500원/㎡
	07-단동-10	25	25	12,900원/㎡
	07-단동-11	20	25	12,800원/㎡
	07-단동-12	40	35	17,500원/㎡
	07-단동-13	35	35	17,000원/㎡
	07-단동-14	30	35	16,500원/㎡
	07-단동-15	30	30	16,100원/㎡
	07-단동-16	25	30	15,200원/㎡
	07-단동-17	20	25	14,500원/㎡
	07-단동-18	50	40	17,700원/㎡
민간	07-단동(민)-1	25	25	13,600원/㎡
	07-단동(민)-2	40	25	18,200원/㎡
	07-단동(민)-3	60	25	22,700원/㎡
	07-단동(민)-4	60	35	27,300원/㎡
	07-광폭(민)-1	30	40	45,800원/㎡
	07-광폭(민)-2	30	40	45,800원/㎡
	07-광폭(민)-3	40	40	47,300원/㎡
	07-연동(민)-1	60	35	40,000원/㎡
자동	07-자동화-1	46	40	60,400원/㎡
과수	07-포도-1	40	35	24,300원/㎡
	07-포도-2	30	30	23,200원/㎡
	07-감귤-1	25	40	28,400원/㎡

3162-19603610-09381681

[별표 2-2] 농림부 고시 제2007-64호에 의한 내재해 적설심 설계강도 기준 (30년 빈도)

적설기준(㎝)	해 당 지 역
20~25미만	경기도 : 강화군, 양평군, 문산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주시 경상도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거제시, 남해군, 밀양시, 의령군, 성주군, 영천시, 진주시, 포항시, 진해시, 마산시, 통영시, 산청군, 의성군, 합천군, 구미시, 안동시,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 광양시, 창녕군, 고령군 전라도 :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고흥군, 구례군, 영암군, 강진군, 여수시, 장흥군, 해남군, 흑산도, 완도, 진도, 보성군 제주도 : 서귀포시, 성산포, 제주시
25~30미만	서울, 경기 : 서울특별시, 수원시, 이천시, 여주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안양시, 평택시, 고양시 강원도 :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 횡성군, 원주시 충청도 : 대전광역시, 부여군, 제천시, 논산시,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옥천군, 예산군, 경상도 : 거창군, 함양군, 영덕군, 상주시, 청송군, 영양군 전라도 : 광주광역시, 전주시, 함평군, 장성군
30~35미만	경기도 : 인천광역시, 화성시, 안산시, 충청도 : 보은군, 공주시, 서산시, 충주시, 보령시, 당진군, 괴산군, 음성군 경상도 : 문경시, 영주시, 김천시, 봉화군, 예천군, 영동군(추풍령) 전라도 : 무주군, 익산시
35~40미만	강원도 : 춘천시,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평창군, 정선군 충청도 : 청주시, 태안군 경상도 : 울진군 전라도 : 군산시, 남원시, 목포시, 장수군, 곡성군, 고창군, 영광군
40이상	강원도 : 강릉시, 대관령,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경상도 : 울릉도 전라도 : 부안군,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 순창군

※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은 인접시군의 내재해 적설심 설계강도 기준의 평균치를 적용

3162-19603610-09381681

[별표 2-3] 농림부 고시 제2007-64호에 의한 지역별 내재해 풍속 설계강도 기준(30년 빈도)

풍속기준 (m/sec)	해 당 지 역
20~ 25미만	경기도 :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수원시, 문산시, 파주시, 동두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강원도 :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도 :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경상도 : 성주군, 합천군, 함양군, 고령군 전라도 :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담양군, 정읍시, 곡성군, 구례군
25~ 30미만	경기도 : 강화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강원도 :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충청도 : 대전광역시, 부여군, 제천시, 충주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경상도 : 청송군, 상주시, 의성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안동시, 군위군, 김천시 전라도 : 광주광역시, 함평군, 부안군, 전주시, 해남군, 나주시, 익산시, 장성군, 화순군, 무안군, 고창군, 무주군, 김제시
30~ 35미만	서울, 경기 : 서울특별시, 부천시 강원도 : 춘천시 충청도 : 보령시, 서산시, 청주시, 아산시, 연기군(조치원),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경상도 : 대구광역시, 문경시,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경주시, 예천군, 경산시, 구미시, 봉화군, 사천시 전라도 : 고흥군, 장흥군, 영광군, 보성군, 영암군
35~ 40미만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충청도 : 보은군 경상도 : 울산광역시, 포항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양산시 전라도 : 진도군, 완도군
40이상	경기도 : 인천광역시 강원도 : 강릉시, 대관령, 양양군, 속초시 경상도 : 부산광역시, 울진군, 울릉도 전라도 :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제주도 : 전지역

※ 위 기준에 표시되지 않은 시군은 인접시군의 내재해 풍속 설계강도 기준의 평균치를 적용

부문1: 주택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합니다.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2. 부속건물 : 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부속건물
3. 빈집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부속설비, 장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기계, 전기, 가스, 냉난방, 급배수 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단,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4. 건물 및 시설 내의 수용 동산 및 동식물
5.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6. 위 제1항에서 규정된 것이 아닌 물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의 소파 미만 손해(침수 제외)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

1. 주택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
1동 또는 1세대 기준가액 × 계약시 정한 보험가입금액비율 (이하 '보험가

3162-19603610-09381681

입금액비율')

2. 주택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단위면적당 기준가액 × 주택면적 × 보험가입금액비율

3. 주택의 기준가액은 일반조항 [별표 2]를 따릅니다.

【용어정의】

주택면적: 보험에 가입한 단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주택

【전파】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반파】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소파】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

【침수】

주택면적	보험가입금액비율	
	70%	90%
50㎡ 이하	140만원	160만원
50㎡ 초과	80만원+[1만2천원×〔주택면적(㎡)〕]	70만원+[1만8천원×〔주택면적(㎡)〕]

②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162-19603610-09381681

부문2: 온실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다음의 시설물(온실)을 말합니다.

【온실의 정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조된 일반조항 [별표2]의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H~J형, A-1형, B-1형), 목재하우스, 죽재하우스, 1-A_2형(표고, 양묘), 연동형비닐하우스(1-2W, 1-2W각관A형, 1-2W각관B형, 1-2W서까래보강형, 1-2W보완형)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축조된 농림부 고시 제 2007-64호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적설심 및 풍속 설계강도 기준(일반조항 [별표2-2] 및 [별표2-3] 참조) 이상인 일반조항 [별표2-1]의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07-단동-1' ~ '07-단동-18', '07-단동(민)-1' ~ '07-단동(민)-4', '07-광폭(민)-1' ~ '07-광폭(민)-3', '07-연동(민)-1', '07-자동화-1', '07-포도-1', '07-포도-2', '07-감귤-1')를 말하며 (이하 『온실』이라 합니다), 다음의 것을 제외합니다.

1. 100m^2미만의 온실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제외)
2.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 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3.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중 농림부 고시 제2007-64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4.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5.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2.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온실의 소파 미만 손해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동 비용이 필요한 경우1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

3162-19603610-09381681

1. 온실의 보험가입금액 : 시설면적 × 시설별 단가 × 보험가입금액비율
2. 시설종류별 기준단가는 일반조항 [별표 2]를 따릅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손해유형별 지급보험금 계산

【전파】

피해면적 × 일반조항 [별표 2]의 시설종류별 기준단가 × 보험가입금액비율

【반파】

전파 지급보험금의 50%를 지급

【소파】

전파 지급보험금의 25%를 지급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162-19603610-09381681

풍수해보험I 특별약관

일반조항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납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이고 연간 주민부담보험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험료는 제외합니다)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2조(분납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 제1회 분납 (7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2. 12회 분납: 1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회 분납,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
   제2회 이후, 매월 일 납입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부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3162-19603610-09381681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부문1(주택) 특별약관

주택 소파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파손해(일반조항 [별표1] 손해구분표 참조)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주택 침수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손해(일반조항 [별표1] 손해구분표 참조)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부문1(주택) 특별약관

동산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1조(보험의 목적과 범위) 제2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으로 한다.

3162-19603610-09381681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 밖에 있는 동산의 손해
2. 동산이 소재하는 시설물의 손해 없이 동산에만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등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동산에 발생한 손해
4. 일반조항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의 소파 미만 사고 시 동산 손해(침수 제외)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

1. 동산의 보험가입금액

가. 주택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

1동 또는 1세대 기준가액 × 90%

나. 주택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단위면적당 기준가액 × 주택면적 × 90%

2. 위 1호에서 동산의 기준가액은 일반조항 [별표2]를 따릅니다.

【용어정의】

주택면적 : 보험에 가입한 단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주택 내에 소재하는 동산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주택의 파손 정도 및 침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전파】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반파】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소파】
제3조의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
【침수】
일반조항 [별표1]의 주택손해구분표 중 침수를 다음과 같이 주거용 방바닥으로 부터의 침수 높이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침수 높이	지급보험금
30㎝ 이하	120만원
30㎝ 초과 100㎝ 이하	상기 반파보험금
100㎝ 초과	상기 전파보험금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에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부문1(주택) 특별약관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제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주택의 침수손해는 보통약관 부문1(주택)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162-19603610-09381681

주택면적	보험가입금액비율	
	70%	90%
50㎡ 이하	140만원	160만원
50㎡ 초과	80만원+[1만2천원×〔주택면적(㎡)〕]	70만원+[1만8천원×〔주택면적(㎡)〕]

②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1(주택)에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기준 이상의 강풍·대설로 인해 하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와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풍수해는 강풍·대설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온실)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부문2(온실) 특별약관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부문2(온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 중 온실의 단순피복재(비닐 등) 파열의 손해가 발생하여 단순피복재의 전부 교체가 필요한 온실에 대하여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의 목적인 온실 내에 농작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의 유리 파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부문2(온실)을 따릅니다.

3162-19603610-09381681

3162-19603610-09381681